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37

발의연월일: 2023. 5. 1.

발 의 자 : 김기현 • 권명호 • 태영호

박성중・임이자・정운천

임병헌ㆍ이 용ㆍ김희곤

박대수 · 김예지 · 류성걸

황보승희 · 김승수 · 성일종

김정재 • 이만희 • 김학용

장동혁 • 윤한홍 • 김상훈

이철규 · 전봉민 · 이태규

김형동 • 이명수 • 한무경

하영제 · 김선교 · 김용판

강기유 • 박정하 • 최영희

지성호 · 송언석 · 박덕흠

조은희 · 김영식 · 하태경

홍석준 • 이채익 • 유경준

서범수 · 박대출 · 권성동

정동만 • 윤재옥 • 이인선

정희용 • 안병길 • 윤영석

강대식 • 윤창현 • 정진석

서병수 · 김석기 · 신원식

金炳旭・정우택・유상범

박수영 · 서정숙 · 박성민

강민국 · 조해진 · 조경태

구자근·유의동·배현진 최재형·조수진·박 진 최형두·전주혜·백종헌 정경희·양금희·김미애 이주환·엄태영·김성원 조명희 의원(8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16만 3,060건에서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44.7%에서 2021년 44.5%로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임.

또한, 2020. 12. 17.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해국민들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최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개발되었고 미국, 캐나 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음주운전자가 방지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거나무단으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장비를 대리조작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 2. 폐차하는 경우
 -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 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용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작동여부 등 이상 유무를 검사받아야 한다.

제7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를 위

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할 수 있다. 단, 질병 등으로 인하여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해당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제44조를 위반하여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부착기가을 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적용받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다시 같은 기간이경과한 후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할 수 있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시 ·도경찰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 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제8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85조의2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그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0호의 규정에"를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이를 운전한 경우
- 22. 제5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3. 제50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47조제5항 중 "대행하게"를 "대행 또는 위탁하게"로 한다.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되었거 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이를 운전하거나 운전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를 대신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0조의3제1항 및 제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 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6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3항, 제50조의3제2항"으로 한다.

9.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등록한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
	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
	<u>한다.</u>
<u><신 설></u>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
	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
	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
	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u>
	1. 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
	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 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 지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시· 도경찰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 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용 자동 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를 시·도경찰 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 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자동차 등을 시·도경찰청에게 등록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음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 ⑤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 · 도경찰청장에 제 출하여야 하며, 이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 유무를 검사받아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 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 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 조를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 허를 발급받아야 운전할 수 있 다. 단, 질병 등으로 인하여 술 에 _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해당분야 전 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제44조를 위

<신 설>

반하여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각 호에 따라 적용받은 운전면허결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다시 같은 기간이 경과한후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취득하여야 운전할수 있다.

제85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 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시·도경찰청장은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 는 사람이 제83조에 따른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 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기 적성검사) ① ~ ④ (생 기 적성검사) ① ~ ④ (현행과 략) 같음)

<신 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저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 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 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

같음)
⑤ 제85조의2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
간이 경과하면 그 조건은 소멸
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u>의 규정에</u>

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 다.

1. ~ 2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 ④ (생략)

⑤ 시 · 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⑤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	-	-	-	-	_	-	-	_	_	_	_	_	_	-	_	_	-	-	-	-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20. (현행과 같음)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이를 운 전한 경우
- 22. 제5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 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3.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 고 이를 시 · 도경찰청에 등록 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

- ④ (현행과 같음)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대행 또는 위탁하게 -----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이를 운전하거나 운전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 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를 대신 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호 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방법으 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 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은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 6.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신 설>

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1. (현행과 같음)
2. 제50조의3제1항 및 제80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
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u>사람</u>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
1. ~ 8. (현행과 같음)
9.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등록한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

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② (생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 · 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 한다), 제13조제1항 · 제3항 · 제 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 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 21조제1항 · 제3항, 제22조, 제2 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 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 27조제1항 • 제7항, 제29조제4항 • 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 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 항 · 제4항, 제48조제1항, 제49 조제1항제10호 · 제11호 · 제11 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 항 • 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 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

<u>운행기목을 세술하시 아니하</u>
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
받지 아니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0조제3항, 제50조의3제
2항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	
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